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0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020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514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8. 19.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514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6. 2.자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66,432,50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432,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1) 원고는 2020. 11.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 5. 주소지에서 소장 부분, 소송안내서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 2) 제1심법원은 2021. 2. 16.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1. 3. 6.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3. 17. 피고에게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1. 3. 30. 위 서류와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 3) 제1심법원은 2021. 5.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2021. 5. 27.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1. 6. 7.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1. 6. 22. 0시에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됨에 따라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그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는바 그 송달은 유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등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1. 6. 22.부터 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한 2021. 8. 18.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고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이지현, 판사 오덕식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래브지붕 13층건아파트

지하층 628.43㎡(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1층 785.58㎡, 2층 내지 12층 각 771.36㎡, 13층 686.49㎡, 노인정 63.80㎡,

관리사무소 42.25㎡, 지하주차장 2270.00㎡,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258.00㎡, 공중빈소 4.2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 17274.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계1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7274.6분의 42.614 ㎡.

